

의안번호	2216569
의 퇴 인	임미애 의원
회 답 일	2026. 5. 15.
추 계 번 호	26B069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4,400만원(연평균 2,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안 제18조의2)	29	29	29	29	29	144	29

주: 1.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와 시도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제2항제10호(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신설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u>10. 제5조의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u>	의무규정
3	안 제18조의2(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신설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55조제2항제5호(우선구매)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u>5.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운영중인 사업이 부재하여 지원 대상 민간단체 수, 1개 단체당 지원금액, 국비·지방비 분담률 등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 및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국가 및 시도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은 기존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7조제2항제10호(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신설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은 해당 연구용역 수행과정 중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d></td><td>농림축산식품부</td><td>해양수산부</td></tr><tr><td>육성계획</td><td>제6차('26~'30)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td><td>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25~'29)</td></tr><tr><td>용역명</td><td>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연구</td><td>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td></tr><tr><td>수행기관</td><td>한국농촌경제연구원</td><td>한국해양수산개발원</td></tr><tr><td>기간</td><td>'25.4.4.~10.31.</td><td>'24.3.3.~10.25.</td></tr><tr><td>용역예산</td><td>60</td><td>72</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육성계획	제6차('26~'30)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25~'29)	용역명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연구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간	'25.4.4.~10.31.	'24.3.3.~10.25.	용역예산	60	7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육성계획	제6차('26~'30)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25~'29)																			
용역명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 연구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																			
수행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간	'25.4.4.~10.31.	'24.3.3.~10.25.																			
용역예산	60	72																			
3	안 제18조의2(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신설	○	유사사례 참고																		
4	안 제55조제2항제5호(우선구매)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우선구매 요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
 -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
 - － 위원회 정원 30명 중 민간위원 수는 24명(정원의 80%)으로 가정
 - － 회의개최 횟수는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회의참석 사례금(안건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2023~2025년

(단위: 명, 회)

	위원 (A=B+C)	공무원 (B)	민간 위원 (C)	정원대비 민간위원 비율 (C/A)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연평균 (3년)
					2023	2024	2025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9	5	24	82.7%	4	4	2	3.3
농림식품과학기술 위원회	28	4	24	85.7%	5	6	4	5
평균	28.5	4.5	24	84.2%	9	10	6	4.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5.10.

- 추계 결과,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222쪽)

[표 3]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24	24	24	24	24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사례금 단가(C, 백만원/명·회)	0.3	0.3	0.3	0.3	0.3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29	29	29	29	29	144

주: 1.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사업 관련 예산 현황은 다음 자료 참고

※ [참고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사업 관련 예산 현황: 2024~2026년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

[참고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사업 관련 예산 현황: 2024~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주요내용	2024	2025	202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농특)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환경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	-	-	15,780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4,237	4,489	5,64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제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	600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세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153	-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자율)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위해 교육·체험·소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 조성	7,300	2,750	1,150
친환경농자재지원(제주) * 유기농업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일부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 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	384
유기농업자재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일부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 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6,206	6,206	7,366
유기농업자재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세종)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일부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 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	6
친환경농업직불 (공익기능증진직불)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22,832	31,913	40,687
친환경농업직불이행점검 (직불제이행점검)	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 친환경농업직불 이행점검에 필요한 예산 지원	200	200	20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	5,020	3,520	3,520
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인증관계자 홍보 등	221	200	200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희망하는 유통·가공업체에 융자 자금을 지원하여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에 기여	22,800	20,520	18,500
유기농식품유통활성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	온라인직거래 희망 친환경농가 대상 온라인몰 입점 및 마케팅 지원	150	143	143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실태조사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판매 등 산업현황 조사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및 산업 활성화 지원	335	335	336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자조금지원)	자조금단체에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소비촉진, 조사·연구 등 사업비 지원	1,537	1,534	1,534

□ 해양수산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주요내용	2024	2025	2026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직불 (인증직불제)	친환경 인증(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 받은 어가에 대해 인증에 소요되는 경영비용 일부 지원	14,494	13,045	20,003